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43회 임시회(2020. 9.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20-118
----------	--------

2020. 9. 10.
전문위원 신준호

1. 제안경위

- 가. 제 안 자 : 김진천 의원 외 8인
- 나. 제 안 일 : 2020. 9. 2.
- 다. 회 부 일 : 2020. 9. 3.

2. 제안이유

본 제정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때에 계절 인플루엔자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과 동시에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규정(안 제1조)
- 나. 무료예방접종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다. 무료예방접종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라. 위탁예방접종 계약 해지 및 무료 예방접종 신청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안 제6조)
- 마. 예방접종실시 후 비용 상환 신청에 관한 사항 및 이의신청(안 제6조~안 제9조)
- 바.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다. 기타

1) 입법예고 : 2020. 8. 28.~ 9. 1.(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 배경

- 본 제정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때에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그동안 보건복지부 고시 및 자체 계획에 따라 접종 대상 주민과 접종 방법을 선별적으로 선정하여 운영하던 무료 인플루엔자 접종에 관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음.

나. 주요 조문 검토

- 조례의 구조적 체계는 본칙 11개 조문과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제시하였고,
- 안 제2조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 주민의 범위를 국가예방접종지원 사업 관리지침과 인플루엔자 위험직군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음.
- 안 제2조제2호의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가을철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 유행할 때 의료자원 부족 등이 예상되어 시비 및 특별교부금이 가내시되어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 및 외부환경 노출이 높은 직업군이 무료로 접종될 수 있도록 반영하였음. 다만, 예산소요의 한계성이 예상되어 부칙에 유효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였음.
- 안 제3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예방접종의 실시와 위탁, 위탁계약의 해

지, 무료 예방접종 신청 및 지원절차,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방법 및 이의신청,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다. 종합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인플루엔자로 인하여 다양한 계층에서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률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우선 접종 대상으로 지정된 사항과 관련법령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마포구민의 의료복지 증진과 예우차원에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을 명문화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판단됨.
- 정부에서는 2020년-2021년 적기 국가예방접종사업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대상을 3차 추경으로 만14세~18세, 만62세~64세까지 확대하였으며,
- 서울시에서는 가을철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할 경우 의료자원의 부족 등이 우려되어 시(市) 차원의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구분	계	의료인력	보육시설교사, 종사자	환경미화원	공공주택경비인력	대중교통운전원	사회복지시설생활자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키움센터종사자	지역아동센터종사자
마포구	10,251	3,386	2,015	261	1,362	2,919	96	55	123	6	28

<표 1. 안 제2조제2호 따른 서울형 접종대상자 인원수>

- 따라서, 이번 제정조례안은 정부와 서울시 의료 복지정책에 기반한 사항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서울시 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하여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¹⁾와 외부환경 노출이 높은 직업군²⁾ 등에 인플루엔자 위험직군을 무료 접종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1) 의료인, 보육교사, 대중교통 운전원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차원의 선제적인 조치로 판단됨.

- 아울러,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로서 마포구 의료 복지 확대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됨.

[관 계 법 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 폐렴구균
14. 인플루엔자
15. A형간염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한 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범위에 관한 사항
2. 위탁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3. 위탁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
4.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예방접종 비용 산정 및 비용 상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